

결 정

2018 - 3045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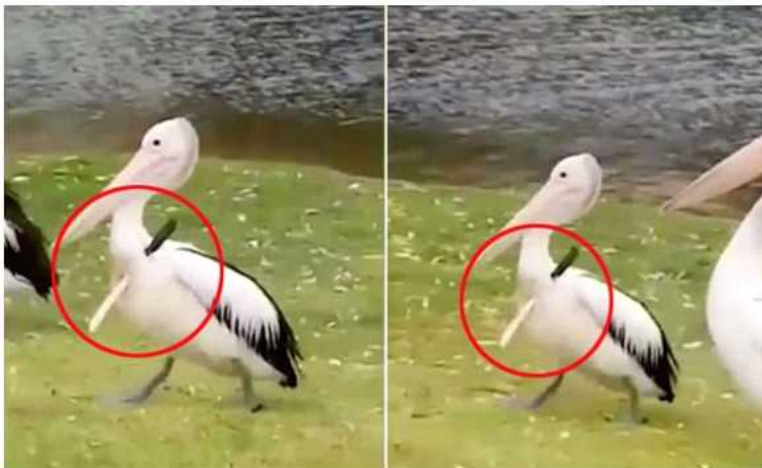
서울신문(seoul.co.kr) 2018년 1월 23일자 「칼 차고 다니는 펠리컨」 기사의 사진과 동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깨 관통한 칼 메고 생활하는 펠리컨 포착』

입력 : 2018-01-23 15:33 수정 : 2018-01-23 15:34



▲ MN khan / Stephanie Downey Facebook
최근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덴마크 하딩 강변에서 칼에 찔린 펠리컨의 모습

거대한 칼이 몸통에 찔린 채 무리와 생활하는 펠리컨의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최근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덴마크 하딩 강변에서 칼에 찔린 펠리컨의 모습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덴마크에 거주하는 스테파니 다우니(Stephanie Downey)는 하딩 강변을 산책

중 놀라운 장면과 마주했다. 하딩 강변을 따라 걷고 있는 펠리컨 무리 중 한 마리의 어깨에 칼이 꽂혀 있었던 것이다. 녀석은 자신의 부리만큼 긴 칼이 어깨를 관통했지만 아랑곳 않고 무리에 섞여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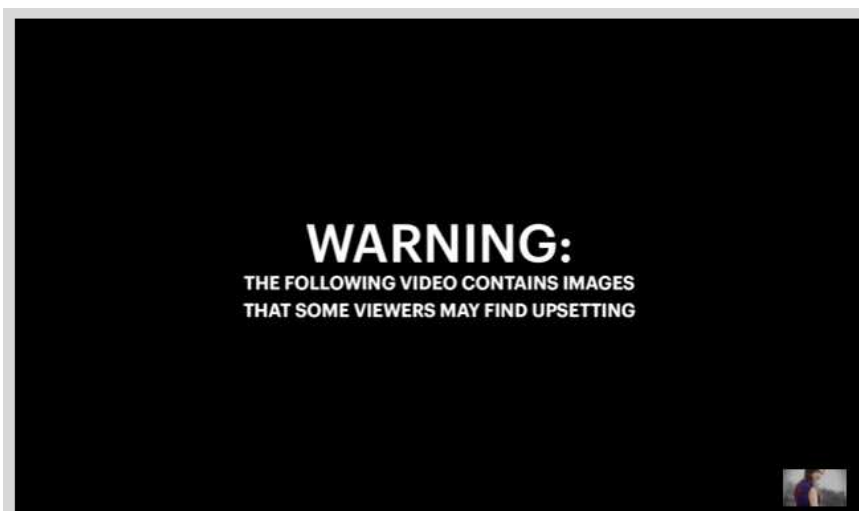
스테파니가 직접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린 이 끔찍한 영상은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로부터 공유되면서부터 많이 회자됐다.



칼이 관통한 펠리컨을 본 사람들은 “오, 세상에~!”를 연발하며 부상당한 펠리컨에 대해 걱정했으며 데일리메일 호주판은 서호주 공원&야생동물 측에 해당 펠리컨에 대해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팀 seoultv@seoul.co.kr 』

<http://stv.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23500113&wlog_sub=svt_006>

※참고 : 일부 시청자에게 거북함 또는,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초기 화면



법정구속 조운선 증혈된 눈·황망한 표정... 고개 내저어



“지연 못참아” 이륙 준비 제주발 여객기 탑승객...
대법관 13명 “원세훈 재판 靑 영향, 사실 아니다”
서울지하철 1호선 잇단 고장에 출근 시민들 불만

속보 아베 “평창개회식 참석”해서 하고픈 말
‘MB 조카’ 이동형... “다스 당연히 아버지 지분...”
나경원,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이 된 숨은 사연

정현, 선수 생활의 결정적 약점을 극복한 방법
“아내 운전 미숙” 사고사 위장한 경찰, 아들에게
‘결승 신화’ 쓴 박항서 ‘베트남의 히딩크’ 칭송
눈 휘둥그레지는 미식령스키장 ‘초호화’ 내부
나탈 총격의 기권매...칠리치 4강 진출
‘다시 복으로’ 현송월, 차 권하자 “일 없습니다”

허경영 최사랑 목격담
신동욱 “롤스로이스 타고..”

허영란, 세차장+카페 CEO
“남편 재벌이나 미천까지”

안선영 “늙고 초라해보여..”
100일 다이어트 결과



조운선 180일만에...



비키니 입고 얼음물...



10년간 사지 마비?



칼 차고 다니는 펠리컨



양체 노소주, 당신
은 어떤가요?



나탈리포트만 고백
첫 팬레터 “충격적”



봉처럼 물뿜는 알파
카의 진실?

서울신문 사이트 바로가기

<캡처시각 18. 1. 24. 12:32>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 네티즌이 호주에서 부상당한 펠리컨 발견하고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 큰 칼이 목 아래 부분을 관통한 펠리컨에 대해 “끔찍하다” “충격적”이라는 네티즌의 반응을 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살아있는 동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긴 사진을 확대해 게재하면서 동영상도 그대로 실었다. 게다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 칼에 찔렸음에도 「칼 차고 다니는 펠리컨」이라며 제목을 달아 회화화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동물학대를 고발하는 취지라면 재발 방지나 동물보호에 대한 언급이라도 있었을 터인데, 그런 내용이 부족하다. 더욱이 해당 동영상을 열어보면 초기화면에 “일부 시청자에게 거부감 또는,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뜬다.

따라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동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주의적 보도행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훼손하는 동시에 어린이들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2월 7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원장	김 용 담	김용담
위원	정 송 호	정송호
	장 명 국	장명국
	이 동 현	이동현
	장 인 철	장인철
	김 규 식	김규식
	강 희	강희
	하 윤 수	하윤수
	김 영 모	김영모
	박 현 갑	박현갑
	박 미 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된다.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